

문서번호	리테일 제 2021년 - 002호
발 신	키움투자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
수 신	수신처 참조
참 조	수익증권 관련 담당 부서장
제 목	소규모펀드 1개월 공시, 정리 계획 및 해소 이행 실적 공시

1. 귀 행(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"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조 제 3항 제 4호 및 제 5호"에 근거한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여 "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 8호 및 제 11호 서식에 따라 소규모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"자본시장법 제 89조 제 2항"에 따른 방법으로 수시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1.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발생월: 2020년 12월

2. 소규모펀드 공시사항

추가 모집이 가능한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래 각호의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,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 192조 1항에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사항 (소규모펀드 이행실적 및 계획 등)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의 제 4호 및 제 5호

제 4호(소규모펀드 1년 공시) 설정(설립)이후 1년이 되는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

제 5호(소규모펀드 1개월 공시) 설정(설립)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우

3. 공시대상 소규모펀드: ※ 첨부파일 참조

4. 소규모펀드 공시방법: 자본시장법 제 89조 제 2항 참조

* 다만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67조의 2(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)에 따라 소규모펀드 공시사항이 발생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음.

5. 수신처 : DB금융투자, IBK투자증권, KB증권, NH투자증권, SK증권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교보증권, 농협은행, 대구은행, 대신증권, 리딩투자증권, 미래에셋대우, 수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이베스트투자증권, 전북은행, 키움증권, 하나금융투자, 하나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양증권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. 끝.

키움투자자산운용주식회사
마케팅본부장

